

경운대학교 대학발전추진단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경운대학교의 「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의거 대학 발전계획의 기획 및 입안하기 위한 대학발전추진단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대학발전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 또는 입안한다.

1.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 특성화 분야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
4. 분야별 사업추진실적과 전공별 발전계획의 점검 및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대학발전추진단 위원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추진단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회의) ① 추진단의 회의는 총장 또는 단장이 소집하고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회의록) 추진단 운영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분야별 위원회) ①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다음의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특성화 :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으로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제도 마련
2. 교육 : 교양 및 전공교과와 비교과 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혁신
3. 연구·산학협력 : 연구지원제도 개선과 산학협력 일체화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
4. 행정서비스 :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환경 및 학생지원 시스템 향상 지원

제7조(보고) 추진단은 기획 또는 입안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① 이 규정 이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추진단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) 추진단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추진단의 사무) 추진단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경운대학교 특성화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